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336 | 2026. 6.15 (2026. 6.8 ~ 2026. 6.14)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대책은 AI 확산·산업 전환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아래, 정부 재정지원의 역할과 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을 수립하여 공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기존 각기 운영 중이던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로드맵을 통합·연계하여 조기 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간 연속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분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입법(행정)예고】

<재정경제부>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철회 통보 및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사용허가 일시중단 사유 구체화 및 손실보상의 내용을 규정하는 등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및 보험·공제 기준, 신설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등을 규정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하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물적분할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 제도를 도입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1인)**」 ,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 · 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가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이번 주는 예정된 의사일정이 없습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관계부처 합동) 7
-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R&D 및 표준화 로드맵」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8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방부) 10
-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고용노동부) 1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1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기후에너지환경부) 1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정경제부) 13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후에너지환경부) 13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1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예산처) 15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1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16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17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의원 등 10인) 17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17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18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18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19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19
-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0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21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1
•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 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1인)	22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22
•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3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3
•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4
•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25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25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5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1인)	26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6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7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7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8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8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의원 등 10인)	29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의원 등 10인)	29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바로가기](#)

- [환경] 화평법 비용분담 분쟁, 조정 절차 도입
- [중국] 중국의 북극항로 전략과 상업화의 현실 - 한국 기업의 기회와 제재 리스크 점검
- [공정거래] 공정위, 담합 등의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
- [방송통신(TMT)] 국민 체감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 [건설/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상당 채무부담확약서 제출 전까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
- [공정거래]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 플랫폼 및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본격화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계부처 합동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 발표
- AI·산업 전환기, 재정사업을 통한 청년·지방 일자리 확충·연계 강화

2026-06-09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기업지원-일자리 연계형 재정 지원방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대책은 AI 확산·산업 전환에 따라 ‘고용없는 성장’ 추세가 강화되고 일자리가 대체·감소될 것이라는 우려 아래, 정부 재정지원의 역할과 방식을 재점검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고 밝힘

그동안 청년 타운홀 미팅·양극화 대응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청년과 지방을 중심으로 일자리 진입의 어려움, 원하는 좋은 일자리 부족 등이 혼재하고 있어 ①민간·기업 중심의 좋은 일자리 창출 유도과 ②직업훈련·교육이 실제 일 경험·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청년과 지방 일자리 지원을 위해 다음 세 가지 재정지원 방향 및 세부 과제를 마련하였음

① [Good-Job Link] 일자리 창출기업 재정 인센티브 강화

먼저, 일자리로의 ‘연계’를 강화함. 대규모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중소·중견기업 스케일업 등 정부의 산업 지원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기업 우대형으로 재정지원 방식을 개선함

사업별 효과성이 낮은 지원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동시에 청년·지방인재 등 채용 성과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율·정책자금 대출금리 등을 우대. 구체적으로 시설·장비, 투자, 지방이전 등 대규모 기업 보조시에 신규·추가 채용계획 및 실적과 연계해 보조금 추가 지원, 성공환원금 경감 등을 추진

② [Good-Job Guard] 산업전환기 일자리 유지 지원

둘째, 일자리의 ‘보호’를 지원. AI·디지털 전환 등으로 기업의 업무와 직무가 변화하더라도, 기존 근로자가 곧바로 일자리를 잃지 않고 새로운 직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무전환 훈련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강화. 특히, 재직자 훈련과 직무 재배치, 단축근무, 조직 컨설팅을 패키지 지원하는 등 산업전환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③ [Good-Job Bridge] AI 인재와 취약분야 AX 지원 연계

셋째, 일자리의 ‘이음’을 확대. 국비 지원 훈련 등을 통해 양성된 청년 AI 인재가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AI 전환 취약 분야 현장에서 코칭 활동을 하거나 직접 채용되어 AI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주고, 이들에 대한 활동 수당 및 인건비를 지원. 이를 통해 청년에게는 현장경험과 채용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AI 전환에 필요한 인력과 역량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기획예산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방안에 포함된 과제들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지원방식·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추후 대상 사업의 집행 상황과 고용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R&D 및 표준화 로드맵」 발표

- 11대 핵심기술과 인재양성을 아우르는 개인정보 기술 생태계 구축 목표
- 기존의 기술 연구개발·표준화 로드맵을 통합·연계하고, 인공지능 환경을 고려한 조기 개정

2026-06-09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부합하는 신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R&D 및 표준화 로드맵(2026~2030)」을 수립하여 공개했음

이번 로드맵은 기존 각기 운영 중이던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로드맵을 통합·연계하여 조기 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간 연속성을 높이고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분야 기술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힘

국내·외 최신 기술 및 표준화 동향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활용 기술 분류체계를 정의하였고, ▲개인정보 주권보장, ▲유·노출 위험경감, ▲신뢰기반 안전활용, ▲인공지능(AI) 대응 기술개발 등 4대 분야 11대 핵심기술을 선정했음

< 최종 선정된 11대 핵심기술 >

분야 (중분류)	연번	핵심기술 (세분류)	주요 세부 기술 및 표준
① 개인정보 주권 보장 (1)	1	정책준수 증명결과 열람	검색증강생성(RAG) 프라이버시 기반 개인정보 보존형 검색(Retrieval) 및 실시간 삭제증명(Forget-by-Design) 기술 등 3건
	2	딥페이크·합성 검증·레이블링	딥페이크 사전 예방을 위한 데이터 변환 기술('26년 예산 반영) 및 관련 표준 등 4건
② 유·노출 위험 경감 (3)	3	옛지 디바이스 개인정보보호	온디바이스 격리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이상행위 탐지 및 자동 통제 기술·표준 등 3건
	4	다크웹·표면웹 유출 탐지	다크웹 상 개인정보 불법유통 패턴 분석 및 공급망 위험지수 산출 기술, 연계 표준 등 5건

③ 신뢰기반 안전활용 (3)	5	재식별 위험도 평가·검증	가명·익명정보 재식별 검증 기술('26년 예산 반영) 및 평가 방법론 표준 등 5건
	6	합성데이터 등 PET 기반 비식별화(단일·하이브리드)	개인정보 보유 제한 관련 시계열 합성데이터 생성 및 검증 기술('26년 예산 반영), 평가 표준 등 3건
	7	마이데이터 동의·위임 통합 자동화 플랫폼	마이데이터·공공 서비스 연계를 위한 신원(SSI) 기반 개인정보 지갑 운영·보안 검증 기술 등 2건
④ AI 대응 기술개발(4)	8	AI 모델 안전성 평가	생성형 AI 모델의 프라이버시 취약성 평가 및 개인정보 생성 억제 기술('26년 예산 반영), 파운데이션 모델 학습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기술('25년, 2건 예산 반영) 및 시험방법 표준 등 6건
	9	에이전트·도구·로봇 실행 보안	에이전트 AI 기반 개인정보 전 생애주기 자동 거버넌스 및 위험예측·보호조치 기술, 연계 표준 등 6건
	10	피지컬 AI 실시간 프라이버시 제어	피지컬 AI·로봇 융합 환경을 위한 프라이버시 인지형 신원·행동 관리 및 최소수집 기술 등 4건
	11	AI 기반 비정형데이터 비식별화(영상, 텍스트, 음성 등)	멀티모달형 AI 기반 개인정보 탐지·추적 및 비식별화 기술('25년 예산 반영), 관련 표준 등 4건

11대 핵심기술 내에는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추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노출 위험 등 안전성 평가, 에이전트·피지컬 인공지능(AI) 환경에서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 등 인공지능 환경에 적시 대응 가능한 기술 요소들을 신규 반영하였음.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과 인공지능이 융합된 AI-PET 기술, 비정형데이터 등의 비식별화 기술 연구 등을 통해 다양한 신기술이 등장하는 환경 속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의 균형을 갖춘 실용적이고 효능감 있는 기술 연구개발(R&D) 및 표준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개인정보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향후 10년간의 인력양성 방향을 신규로 마련했음. '개인정보 보호·활용, 유출사고 예방·대응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 인재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임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시행일자
국방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6-06-10 시행 예정

현행법은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20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목적을 입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상응하는 처벌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바, 앞으로는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그 처벌 수준을 상향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하고 국가 방위산업기술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국방부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2-10 시행 예정
-----	---	------------------

국방반도체의 핵심 기술개발과 생산 촉진을 지원하여 기술기반과 생산기반을 확충함으로써 국방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에서 생산된 국방반도체의 적극적인 사용 촉진을 통하여 구매기반을 확대하는 등 국방반도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국가안보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7-06-10 시행 예정
-----------	--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생산된 국가연구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데이터관리계획 제출 근거 마련 등 종합적인 추진체계를 법률에 규정**하고,

연구데이터 생산자의 권리 보호와 산업계의 핵심 기술 유출 방지 장치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국가연구데이터의 디지털 자산화와 안전한 공유·활용 생태계를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2027-03-10 시행 예정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및 전력계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등 인공지능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발전과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27-06-10 시행 예정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휴게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며, 근로자가 일정한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연차 유급휴가를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 부여하도록 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2026-06-09 시행

환경적·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려는 경우 해당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환경성적 가(假)산정, 대상 제품군의 법정 의무사항 검토 등에 관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환경성적표지 인증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6-12-10 시행 예정

전기·전자제품의 판매 시 적용되는 포장재 및 폐제품의 무상 회수 범위를 설치가 수반되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여 판매자의 과도한 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현장 실행력을 제고하며,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주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거점수거센터의 취급품목을 에너지 전환에 따라 발생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으로 확대하여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며, 미래폐자원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체제의 구축·운영을 위한 시책 수립·시행과 시책에 포함된 사업의 수행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글로벌 규제에 대응할 숙련된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재정경제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0. ~2026.07.20.

일정 규모 이상 국유재산을 처분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사용자 귀책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유재산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① 국유재산 처분 시 사후 보고 대상을 구체화 (안 제5조의2)

- 매각을 제외한 국유재산 처분은 대장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경우, 매각은 매각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국회에 사후 보고

② 사용자 귀책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철회 통보 및 제한 기간 규정 (안 제34조의2)

- 사용허가 취소·철회 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 및 총괄청이 지정하는 전자정보시스템에 입력
- 제한 기간은 2년

③ 사용허가 일시중단 사유 구체화 및 손실보상의 내용 규정 (안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

- (일시중단) 시설물 안전등급 C이하, 천재지변·재해 등으로 부득이하게 보수가 필요한 경우
- (보상수준) 일시중단으로 영업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실

④ 일반재산의 위탁개발 수탁기관을 확대 (안 제38조)

- 재원조달과 개발 역량을 가진 지방공사(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일반재산 위탁개발 수탁기관에 추가

※ 문의처 :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과 (전화: 044-215-5154, 팩스: 044-215-8110)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12. ~2026.07.22.
----------	-------------------------------------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① 수소경제 이행촉진을 위한 사업 범위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2신설)
 - 수소 학술활동, 이용·보급 관리기관, 금융지원 등 조성된 사업비 활용사업 범위를 규정
- ② 출연금 지급방법 및 관리체계 규정 신설 (안 제16조의3, 안제16조의4 신설)
 - 출연금 분할지급 원칙, 용도 제한, 별도 계정관리 및 보고·환수 등 관리체계를 규정
- ③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보급 촉진 및 보험·공제 기준 규정 신설 (안 제34조의18, 안 제34조의19 신설)
 - 설비 활용 확대 협조요청, 보험 가입 기준 및 공제 가입요건을 규정
- ④ 수소에너지 기술의 국제표준화 지원 범위 규정 신설 (안 제34조의20 신설)
 - 국제표준 관련 지원 범위를 규정
- ⑤ 공용화 품목 지정 절차 신설 (안 제34조의21 신설)
 -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와 중소기업 중심의 용자 지원비율을 규정
- ⑥ 보급사업 추진체계 신설 (안 제34조의22 신설)
 - 보급사업 실시기관 선정, 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
- ⑦ 수소에너지 공제조합 운영기준 및 사후관리 체계 규정 신설 (안 제34조의23, 안 제34조의24 신설)
 - 공제규정 필수사항 및 사후관리 대상·주기 기준을 규정

※ 문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경제기획과](mailto:hydrogen@korea.go.kr) (전화: 044-203-4766, 팩스: 044-203-4766)

국토교통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9.
~2026.07.20.

도심 내 공실인 민간 업무·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리모델링하여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산업센터 공실을 활용한 비주택 리모델링 수요가 있으나 현행 규정상 매입 대상이 제한되므로 매입 대상을 확대하고, 해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비주택 용도변경 후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전 주차대수 기준을 적용 가능토록 허용하는 한편,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를 위해 기적용 중인 전세임대 다자녀 기준 완화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mailto:publichousing@korea.go.kr) (전화: 044-201-4479, 팩스: 044-201-5572)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06.10.
~2026.07.20.

데이터센터 내 상시 체류 인원이 없는 공간을 거실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승용승강기 설치기준을 합리화 하고, 별도의 환기설비가 설치된 욕실·화장실을 필요 환기량 산정대상에서 제외하여 환기설비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며, 다른 법령의 폐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전화: 044-201-3772, 팩스: 044-201-5574\)](tel:044-201-3772)

기획예산처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06.09.
~2026.07.06.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

①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설치 (안 제2조의3 제1항, 제2항 신설)

-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함

②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의3 제3항, 제4항, 제5항 신설)

-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시·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사람이 직무를 대행함.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

※ 문의처 : [기획예산처 재정협력총괄과 \(전화: 044-214-1911, 팩스: 044-214-3810\)](tel:044-214-1911)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있어 그 주장 및 입증 책임은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있음. 그러나 실제 민사 분쟁, 특히 금융 관련 분쟁 등 소비자와 기업 간의 분쟁에서는 소비자는 구조적으로 상대적 강자인 기업에 비하여 그 증거 확보 등이 매우 곤란하게 되는바, 이른바 ‘증거의 편재(偏在)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현행법은 당사자의 증거 확보를 돕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신청 제도 등을 두고 있으나 문서제출명령신청의 경우 그에 불응하여도 그 제재의 수준이 매우 약한 것인바, 이러한 제도만으로는 증거의 편재 현상을 극복하여 실질적으로 공정한 민사소송을 구현하기 곤란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오고 있음

이에 문서제출명령 불응 시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되 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를 신설하고, 미국 등에서의 증거수집 관련 절차인 디스커버리(discovery) 제도 중 증언녹취(deposition) 제도를 참고하여 ‘당사자에 의한 신문’ 제도를 도입하며, 최근 소위 ‘K-디스커버리 제도’의 일환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된 ‘지정전문가에 의한 조사’ 제도를 민사소송 일반에 도입하여, 증거의 구조적인 편재를 완화하고 변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임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상당 부분 투자되어 있으며, 상장기업들의 수시배당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배당이 연 1회 또는 2회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이익배당의 특례로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금융지주회사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에 충분히 투자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배당의 분기지급 또는 월지급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당을 통한 주주들의 안정적인 소득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가계 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중심으로 배분되도록 유도하여 자본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자 함. 나아가 주주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12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현행 가맹사업 구조에서 가맹본부는 가맹금, 필수 인테리어 등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실현하지만, 가맹점주는 매출 부진 시 폐업 외 선택지가 없어 구조적 불균형이 고착되고 있음. 현행법은 일부 보호 장치를 두고 있지만, 예상 매출 미달 시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의 형식적이거나 사후적인 조치에 불과함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경영상 피해를 최소화하고, 가맹본부의 책임 있는 사업 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가맹금 등의 일부를 적립하고, 일정 요건 하에 가맹본부가 폐업 가맹점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하고자 함** (안 제13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양수의원 등 10인)

2026-06-11 발의

현행법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2(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5억 원)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사업자가 얻는 경제적 수익 규모에 비해 현행 과징금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최근 3년 이내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 인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사업자등에 대하여는 과징금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5(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 원)로 상향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06-11 발의

현행법은 감사인이 회사에 대하여 회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재무상태가 양호한 상장회사가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인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주주들과 금융당국이 이를 바로 알기 어려워 소수주주들의 손해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재제조치도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회사가 감사인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감사인이 그 사실을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에 통보하고 주주총회와 증권선물위원회에 각각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소수주주의 피해를 줄이고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예방하고자 함 (안 제22조 등)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06-11 발의

최근 상장회사가 핵심 사업부문을 물적 분할하여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후 자회사를 상장하는 과정에서 모회사의 주가가 급락하여 소수주주가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지배주주가 모회사 지배력을 유지하면서 자회사 상장을 통해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소수주주는 분할에 따른 가치 훼손을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물적분할 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대주주의 의결권 지배력으로 인해 사실상 소수주주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현행법은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대한 일부 배정 등의 보완장치를 논의하고 있으나, 이는 사후적 보완수단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이해상충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물적분할과 같이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 이해상충이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를 제외한 소수주주 다수의 동의를 요구하는 소수주주 다수결(Majority of the Minority)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보 비대칭과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보하며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안 제165조의21 신설)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0인)

2026-06-11 발의

현재 원사업자의 부실 등으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지급한 대금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연지급 되는 등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위탁의 경우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활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청구·지급·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함 (안 제14조의2 신설)

다만, 안 제14조의2에 따라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대금 등 지급채무 관계는 변동이 없도록 함 (안 제14조제1항제2호)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3인)

2026-06-09 발의

현행법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국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기업 투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일반적인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납입금액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이 제한적인 실정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와 더불어 국내 자본시장의 저평가 현상이 지속되면서, 가계 자금이 국내 주식시장보다는 해외 증시나 단기성 안전자산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이에 기업의 주주환원 확대를 유도하고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장기 투자를 독려할 만한 세제상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거주자가 국내 상장주식에 100분의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집합투자기구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최대 3억원의 한도 내에서 투자금액 구간별로 차등화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증시로의 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고배당기업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대상에서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세율을 우대하여 분리과세함으로써 장기 투자 문화의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91조의29 및 제91조의30 신설 등)

재정경제기획
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는 거주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로 보상받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도록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대토보상의 방식을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과세특례 대상을 토지로만 한정하고 있어 위 개정안이 시행되더라도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백이 발생함

이에 「조세특례제한법」의 과세특례 적용 대상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건축물 및 해당 사업시행자의 토지나 건축물로 보상받는 부분을 추가하고,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함으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입법 취지가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7조의2)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는 가능하나 해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 (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항제4호 등)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0인)

2026-06-12 발의

현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주거안정 지원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 등을 두고 있음. 이러한 규정들은 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재도전을 지원하고, 청년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며, 벤처기업과 창업중소기업의 육성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들이나, 해당 감면조항은 일몰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에 한하여 시행되고 있어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2026년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산을 매각한 중소기업이 매각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57조의3)

- ②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연체자의 채무 상환 및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연체자가 그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해당 연체자의 주택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57조의4)
- ③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을 개발·조성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58조제1항)
- ④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또는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을 5년 연장함 (안 제58조의3)
- 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를 5년 연장함 (안 제60조)
- ⑥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함 (안 부칙 제2조)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의원 등 13인)

2026-06-04 발의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AI)과 딥페이크 등 정보처리 기술이 급격히 고도화됨에 따라 타인의 얼굴, 음성, 영상 등을 정교하게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도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졌음.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산업과 일상에 편의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기술을 악용한 신종 범죄가 증가하여 막대한 사회적 비용 지출 등의 각종 피해를 낳고 있음. 특히,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작된 허위 영상이나 음성을 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타고 순식간에 확산되어,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인격권 침해를 가하고 있음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형을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70조제3항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 중소유통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대형마트에 대하여 매월 이틀을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류 열풍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K-쇼핑에 대한 수요 또한 확대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국인 관광객이 집중 방문하는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가 의무적으로 휴업을 함에 따라 외국인의 관광 소비지출을 제약하고 있으며, 관광특구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관광특구 안에 있는 대형마트에 대하여는 의무휴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관광산업의 발전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4조제4항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이철규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최근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자금, 전문인력, 데이터, 기술 역량 등이 부족하여 활용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임

특히 대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투자와 생태계가 형성되면서, 중소기업은 인공지능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적용과 확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 학습 및 활용에 필수적인 데이터 확보의 한계, 규제 불확실성, 전문인력 부족 등 구조적 제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미국 등 주요국은 중소기업의 인공지능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데이터 개방, 기술지원, 규제 개선, 인력 양성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법령 및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활용·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경영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2026-06-10 발의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가상·증강 현실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교육과 기술이 융합된 이른바 에듀테크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학습 플랫폼, 학습데이터 기반 진단·평가 등 다양한 산업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이러닝 중심의 법률체계는 위와 같이 변화된 산업 구조와 기술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 이러닝을 포함해 새롭게 확장·재편되는 에듀테크산업으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현행 법률을 「에듀테크(교육정보기술)산업 진흥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에듀테크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에듀테크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에듀테크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준병의원 등
11인)**

2026-06-12 발의

지난 2004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 이후 지역산업 육성, 공공기관 지방이전, 교통·물류망 확충 등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해소,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었고, 지역의 자립적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해왔음

그러나 제조업으로 밀집된 주력산업이 산업 변화에 따른 위기를 겪게 되자 비수도권은 성장 정체, 혁신 활동 취약, 청년 인구 유출, 지역경제 침체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인구, 소득, 산업·지역 성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되면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 고용 및 총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소멸위험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28개 시·군·구 중 130개(57.0%)가 소멸위험지역이며, 그 중 57개(25.0%)는 소멸고위험지역으로 나타나 인구·경제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투자 및 지방기업에 대한 지원과 지역이 주도적으로 설계·운영하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및 기회발전특구 규제 특례 부여,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기회발전특구 기반 확충 등을 규정하여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이전 등을 촉진하고 기회발전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2인)**

2026-06-08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혁신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김주영의원 등 11인)

2026-06-08 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은 에너지·산업·도시·농식품·순환경제 등 사회 전 영역에서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음. 이 과정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은 탄소감축과 기후위기 적응역량 제고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특히 온실가스 감축 및 제거, 기후변화 적응, 기후위험 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서비스·비즈니스의 집합으로서 ‘기후테크’의 중요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기후테크는 연구개발의 성공만으로 시장 확산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영역이 아님. 기후테크가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감축 가능성과 효과가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실증·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야 하며, 투자·금융·조달 등 시장 메커니즘과의 연결이 함께 작동해야 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국가 감축목표와 정책방향을 규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이 강하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은 기술개발 촉진과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은 환경산업의 일반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음. 이들 법률은 각기 고유한 정책 목적에 따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 왔으나, 기후테크가 시장에서 사업화되고 산업으로 확산되기 위해 요구되는 정량 성과의 검증, 성과 기반 사업화 지원, 투자·금융 연계에 따른 시장 활성화 및 수요 창출, 그리고 규제특례와 인허가 절차의 신속처리를 하나의 정책 흐름으로 결합하는 종합적·연쇄적 체계는 충분하지 않음

이에 기후 회복력 강화와 온실가스 감축·제거 및 기후위험 적응·관리에 기여하는 기술을 “기후테크”로 정의하고,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기후성과”를 정량적으로 평가받아 이를 자금지원·금융조달과 연계할 수 있도록 “기후가치평가” 체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규제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다부처 규제 환경에서의 실증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초기사업화 지원금과 기후테크전문투자조합 등 지원책을 마련함. 아울러, 기후테크 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이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핵심기술을 가진 창업기업과 공급망 상의 전후방 연계 기업들을 하나의 ‘전략사업’으로 지정·육성하고자 함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현행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충분히 존중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근로자로서의 권리 보장에도 한계가 있음.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생계유지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최저임금이 예외 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7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현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최근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 보장과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도의 폐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배제된 장애인에 대하여 적절한 임금 보전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는 등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그러나 최저임금 적용 시 사업주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또는 고용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적용 확대와 고용 유지 간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을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보장을 도모하고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1조제3항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건설공사발주자는 설계자, 시공사 등을 선정하고, 건설공사의 기간과 비용을 산정하는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체임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책임과 의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건설현장은 다수의 건설공사도급인이 동시에 작업을 실시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건설기계와 종사자도 수시로 바뀌는 등 다른 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어, 작업의 혼재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이에,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착공 전 설계단계부터 산업재해 예방 조치와 이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고, 안전보건조정자의 업무 범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여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공사 특수성에 맞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을 낮추려는 것임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1인)

2026-06-09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쟁의권 보호를 위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사용자의 대체인력 채용 및 도급·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폭력·점거 등 쟁의행위로 보호될 수 없는 불법행위와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사용자의 신속한 대응 수단이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사용자는 쟁의행위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사업장의 안전한 운영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긴급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조정신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재 기간 중에 한정하여 해당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하거나 그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1조의3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역별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 촉진과 분산에너지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었으나, 현행 「전기사업법」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족하여 특별법의 정책과 제대로 맞물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존재함

이에 이 법의 목적에 전기의 지역 생산·소비를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명시하고, 전기판매사업자가 기본공급 약관을 작성할 때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에너지의 지역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조, 제16조제6항 신설 및 제25조제6항제5호의2)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의원
등 10인)

2026-06-09 발의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할 때에 송전·배전 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에 차등요금 산정의 구체적 기준이나 객관적 지표가 부재하여 오히려 지역균형발전이 저해된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을 정하는 경우 송전·배전 거리, 전력 자급률,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요금제도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43조 및 제45조)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1인)

2026-06-10 발의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등 구체적인 공급조건을 약관으로 정하여 인가받도록 하고 있으며, 전력 산업기반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에 비례하는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과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에너지 다소비 업종으로, 특히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소재한 철강 및 석유화학 기업들의 경우,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기업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경제 침체와 고용 불안정으로 직결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위기 관련 지정 지역 내에서 철강산업 및 석유화학산업용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별도의 선택공급약관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업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에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제3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등)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의원 등 11인)

2026-06-11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중심으로 제재하고 있으나, 실제로 벌금형 위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처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제재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은 한계가 있음. 또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기업에 비용 절감 등의 불법적 이익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의 기대이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실효적 제재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근로자의 생명·안전에 직결되는 핵심 안전·보건조치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 경제적 제재를 병과함으로써 위반 유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9조의2 및 제161조의2 신설)

기후에너지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2인)

2026-06-11 발의

현행법 제25조제1항은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후 3년 이내에 해고 당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할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수동적 요건에 그치고 있어, 해고 이후 경영상태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어 인력 복원이 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 채용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경우에는 해고 근로자의 재고용이 사실상 어려운 한계가 있으며, 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지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리해고의 원인이 되었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해소된 경우에는 채용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정리해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울러 경영상의 필요 해소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적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25조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등 10인)

2026-06-08 발의

최근 인구 고령화에 따른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운전자의 인지·판단 능력 및 신체 반응 저하로 인한 가속 페달 오조작, 전·후진 착오, 장애물 미인지 등에 의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일반적 사항 등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고령운전자의 사고 특성을 반영한 튜닝 등 고령운전자 맞춤형 기술 도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자동차소유자가 고령운전자의 안전을 위한 튜닝을 하려는 경우 그 승인 및 검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간소화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튜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령운전자의 행정적·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도로 교통 안전을 효과적으로 제고하고자 함 (안 제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정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현행법은 공공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등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비구역 인근에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조성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정비구역에서 일정한 거리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하는 것으로 해당 의무의 이행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68조제4항제5호의2 후단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0인)

2026-06-10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가 구매한 신차에서 일정기간 내에 동일한 증상의 하자가 반복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교환·환불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환·환불 중재제도를 통하여 원활한 교환·환불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에게는 교환·환불 요청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상당수가 이용하는 렌트 또는 리스 차량에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수사업자인 자동차대여사업자는 자동차제작자등에게 교환 또는 환불을 요청하기 어렵고 이는 자동차 이용자의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동차의 하자과 제조상의 결함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가 필요하나 자동차제조사가 아닌 소비자는 이를 알기 어려워 자동차의 하자과 인한 교환·환불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과 인한 교환·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차의 하자과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자동차제작자등이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자의 권리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7조의2제2항 및 제47조의4제6항 신설 등)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 없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6/15(월) 10:00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으로 완성한다	한지아·박희승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6/15(월) 14:00	미래국토인프라 혁신포럼 15차 세미나: 국가 미래를 위한 인프라 대전환 -다학제 전문가 토론회-	송석준·손명수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6/15(월) 15:00	2026 소상공인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	민병덕 의원실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6/16(화) 09:30	배달 플랫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처방	김원이·정진욱 의원실 등	국회도서관 소강당
	6/16(화) 14:00	K-애니메이션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방송발전기금 전략적 투입 및 제도 개선 정책 간담회	윤후덕·김현 의원실 등	의원회관 11간담회의실
	6/17(수) 10:00	모바일 광고시장의 이용자 후생을 위한 학계-시민단체 토론회	한민수·이해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6/17(수) 14:00	환경과 기업을 살리는 중장기 무탄소 에너지 전략	우재준·김소희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6/18(목) 10:00	고용평등공시제,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박홍배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6/18(목) 10:00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현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박수민·김소희 의원실	의원회관 2간담회의실
	6/18(목) 14:00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배상체계 전환의 의미와 과제	우원식·박지혜 의원실 등	입법조사처 대회의실
	6/19(금) 18:00	자원빈국 대한민국은 어떻게 제련소를 수출했나	김용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간담회의실
자료집 등	6/8(월)	「Data+」 제2026-9호(통권 제33호) 발간	국회도서관	
	6/10(수)	「금주의 서평」 제2026-23호(통권 제782호) 발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335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6/8(월)	「최신외국정책정보」 제2026-7호(통권 제31호)	국회도서관	
	6/10(수)	「금주의 서평」 제2026-22호(통권 제781호)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6/8(월)	환경	화평법 비용분담 분쟁, 조정 절차 도입
6/9(화)	중국	중국의 북극항로 전략과 상업화의 현실 - 한국 기업의 기회와 제재 리스크 점검
6/9(화)	공정거래	공정위, 담합 등의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내용 및 시사점
6/10(수)	방송통신(TMT)	국민 체감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본격 착수
6/10(수)	건설/부동산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 부담금 상당 채무부담확약서 제출 전까지,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는 적법
6/10(수)	공정거래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 신설 - 플랫폼 및 대기업집단 규제 강화 본격화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남형기 | 고문

프로필보기



김건훈 | 수석전문위원

프로필보기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이승상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